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주요내용

개정의 필요성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성이 켜져가는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전산망 표준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보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995. 8. 19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 목적에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용」을 추가
(신 설)	3. "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전자문서의 효력인정과 관련한 정의 신설
(신 설)	4.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 전자문서의 효력인정과 관련한 정의 신설
(신 설)	5. "전산망관리자"라 함은 해당 전산망에서 주가되는 전자계산조직을 관리하는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자를 말한다.	○ 전자문서의 효력인정과 관련한 정의 신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관리·운영, 이용등(이하 "전산망의 보급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	○ 전산망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포함
제 4 조(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 4 조(전산망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 전산망 개발보급과 관리·운영·이용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산망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시책 …… …… .	○ 시책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 추가
1.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개발	1.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개발지원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신 설)	6. 전산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지원	
(신 설)	7. 전산망의 안전·신뢰성 제고	
(신 설)	8.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 ……	
③ 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삭 제)	○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규정
제 5 조(시행계획의 수립)	(삭 제)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수립
제 6 조(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	(삭 제)	○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통합
제 7 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삭 제)	○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규정
제 9 조(기술개발촉진등) ① 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기술개발촉진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 …… …… ……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 …… …… .	○ 용어정리 – 체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 제4조에서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므로 "기본계획"삭제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과기처의 정보통신관련업무를 이관 받았으므로 과기처장관과의 협의절차 생략
제 14 조(기술기준의 제정)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4 조(기술기준의 제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연동성과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	○ 용어정리(체신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 ○ 기술기준에 전산망의 안전·신뢰성 부분을 추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 정보통신부령 …….	– 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제 14 조의2(전산망관련 표준화의 추진) 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	제 14 조의2(전산망에 관한 표준화)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채택·고시하고, ……	○ 신속한 표준제정을 위하여 표준제정 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진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제조 또는 공급하는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산망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 및 서비스가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전산망표준 적합인증제도를 신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기기의 형식승인)	(삭 제)	○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제도로 운영
제 17 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등) ① 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유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제 17 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공동이용,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전산망간 연계운영등…….	○ 용어정리(체신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 ○ 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 권장 · 지원 범위의 확대
(신 설)	제 17 조의2(전자문서의 효력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 · 등록 · 신고 · 허가 · 인가 · 승인등(이하 "신청 · 승인등"이라 한다)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업무와 전산망관리자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 · 승인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청 · 승인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사업자를 전산망관리자로 정할 때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 –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대상업무와 전산망 관리자, 서식표준 등 필요한 사항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 17 조의3(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한 원칙을 규정
(신 설)	제 17 조의4(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산망관리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의 판단기준을 규정
(신 설)	제 17 조의5(전자문서의 공개등) ①전산망관리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산망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산망관리자가 전자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규정
(신설)	제 17 조의6(전자문서의 보관) 전산망관리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과 관련, 일정기간 보관토록 함
제 23 조(전산망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전산망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전산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전산망사업자등의 준수사항) …… 그 종업원, 전산망이용자는 전망망의 관리·운영·이용에 있어서 …… ……	○ 전산망의 관리·운영·이용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제 25 조(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 25 조(비밀등의 보호) ① …… …… …… …… ②누구든지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자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금지조항 신설
제 26 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제 26 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 용어정리 -체신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28 조(위탁)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위탁 할 수 있다.	제 28 조(위탁) 정보통신부장관 …… …… …… …… …… 정보센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에….	○ 정보통신표준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전산망표준화 기능을 한국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 29 조(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 조(벌칙) …… …… …… 3천만원이하의 ……. 제29 조의2(벌칙) ①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기록을 행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산망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금형을 타법령과 동일하게 규정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리) ○ 전자문서의 위조·변조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신 설)		
제 30 조(벌칙) ①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산망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 조(벌칙) ① 제25제1항 …… …… 3천만원이하의 ……. ② …… …… 5천만원이하의 …….	○ 제25조의 개정에 의한 조문정리 ○ 벌금형을 타법령과 동일하게 규정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정리)
제 30조의2(벌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 조의2(벌칙) …… …… 1천만원이하의 ……. 제 31 조(양벌규정) ……	○ 벌금형의 현실화
제 31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의… …….	○ 제29조의2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